

광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 인개택총580-1호

광고일자 : 2018년 7월 19일

광고기간 : 2018년 7월 19일 ~ 2018년 8월 18일

게시판 : 각 충전소

공 고 문

제 목 : 조합 정관 개정 승인.

2018. 7. 13일자 인천시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되어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조합은 근본적으로 잘못 정립되었던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민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므로서 승인되어야할 정관이 승인되지 못하고 조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재정적 손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정관 24조 1항의 개정 의결정족수가 합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인천시로부터 개정 정관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이번 정관개정을 계기로 조합의 기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